#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878

발의연월일: 2022. 12. 12.

발 의 자:백혜련·강준현·강훈식

김영진 • 박상혁 • 이원욱

이정문 • 이형석 • 임호선

전용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16년 「형법」이 개정(2018.1.7. 시행)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·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.

이와 관련하여, 개정 「형법」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 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(안 제14 조, 제15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호다목 중 "징역형을"을 "금고 이상의 형을"로 하고, 같은호 라목 중 "형의"를 "금고 이상의 형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가목중 "징역의"를 "금고 이상의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형의"를 "금고이상의 형의"로 한다.

제15조제2항제6호 중 "징역의"를 "금고 이상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"형의"를 "금고 이상의 형의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14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	
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	
을 할 수 없다.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1
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	
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	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이 법을 위반하여 <u>징역형</u>	다 <u>금고</u>
<u>을</u>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	<u>이상의 형을</u>
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	
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	
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	
이 지나지 아니한 자	
라. 이 법을 위반하여 <u>형의</u>	라 <u>금고</u>
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	<u>이상의 형의</u>
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	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	
있는 법인	
가. 이 법을 위반하여 <u>징역의</u>	가 <u>금고</u>

실형	을	선고	받고	ユ	집행
0	끝니	<b>가거나</b>	(집행	0]	끝난
것으	로	보는	경우	를	포함
한디	l) 집	급행이	면제	된	날부
터	5년	이 ス	나지	(٥	-니한
자					

나. 이 법을 위반하여 <u>형의</u>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3.·4. (생략)

제15조(다단계판매원) ① (생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 로 등록할 수 없다.
- 1. ~ 5. (생 략)
- 6. 이 법을 위반하여 <u>징역의</u>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
- 7. 이 법을 위반하여 <u>형의</u>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<u>이상의</u>
나 <u>금고</u>
<u>이상의 형의</u>
3.·4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다단계판매원) ① (현행과
같음)
②
1. ~ 5. (현행과 같음)
6금고 이상
<u>ol</u>
7
의 형의